##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19 발의연월일: 2024. 11. 13.

발 의 자:박덕흠・엄태영・박성민

조지연・강승규・김선교

고동진 • 정희용 • 김상욱

김예지 • 이종배 • 김정재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운영 중이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는 직접지불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지가 산업단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공익사업 등을 위해 편입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실제 토지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영농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지불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에 농지가 수용돼 농지 형상·기능 상실에 농가의 귀책이 없고 영농이 여전히 이뤄지는 경우에는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법률 제 호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토지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지구·지역·단지로 지정되어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토지 중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본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
-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 지
- 라. 그 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부지에 포함되어 수용된 토지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 지불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① (생 략)	농지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	②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농지등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	1
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u>.</u>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토
	지에서 「친환경농어업 육
	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
	9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
	3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u>경우</u>
2. 「농지법」 제34조·제35조	2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 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u>농지(다른 법률에 따라</u>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_\_\_\_\_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

I	I
	<u>단지의 토지</u>
<u>&lt;신 설&gt;</u>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의 토지
<u>&lt;신 설&gt;</u>	라. 그 외에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u>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u>
	<u> 따른 공익사업의 부지에</u>
	포함되어 수용된 토지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